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36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고민정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11.

3. 회부연월일 : 2026. 3.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의 심화 연구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및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주관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 연구 및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과 부패를 예방하고 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국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에 관한 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u> <u>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u> <u>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u> <u>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u> <u>는 공무원으로 본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한국사 전문 연구기관으로,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및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¹⁾.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며, 비상임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고 있음²⁾³⁾.

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2.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을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3. 한국사 연수 및 사료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등
4. 한국사정보화를 위한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시행
5.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
6. 국가 중요 사료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열람·복제 요청 및 국가 중요 사료의 보존·관리·편찬 등
7. 그 밖의 사료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한국사 연구·편찬·연수·보급 등

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의 경우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형법」상 뇌물죄 등 범죄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뇌물에 관한 죄)⁴⁾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위원의 위촉 등) ①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국사편찬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행정위원회’⁵⁾로서 소관 업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규정은 필요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⁶⁾은 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⁷⁾.

5)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③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2023.12.30.)

- 참고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는 경우 업무의 공공성 정도, 수탁업무의 성질, 업무의 관여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제127조)⁸⁾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⁹⁾.

개정안은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 소관 역사 관련 유사 기관의 경우에도 「형법」상 뇌물에 관한 죄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규정으로 보임¹⁰⁾.

- 교육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조항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소관 법률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85

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9)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 p.748

10) 「한국고전번역원법」

제2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번역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참고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명단

※ 21대 비상임위원 위촉기간 : 2026.1.26. ~ 2029.1.25.(3년)

연번	직위	성명	현직	전공	비 고
1	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근현대사	
2	위원	한궁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근대사	상임
3	위원	임상택	부산대학교 교수	고고학	비상임
4	위원	박현숙	고려대학교 교수	고대사	비상임
5	위원	조법중	우석대학교 교수	고대사	비상임
6	위원	정요근	서울대학교 교수	고려시대사	비상임
7	위원	권기중	한성대학교 교수	조선시대사	비상임
8	위원	이욱	순천대학교 교수	조선시대사	비상임
9	위원	이정수	동서대학교 교수	조선시대사	비상임
10	위원	김소영	공주대학교 부교수	근대사	비상임
11	위원	도면희	『Korea Journal』 편집위원장	근대사	비상임
12	위원	정병욱	고려대학교 HK교수	근대사	비상임
13	위원	강혜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현대사	비상임
14	위원	김성조	연세대학교 부교수	현대사	비상임
15	위원	송미령	전북대학교 교수	동양사	비상임
16	위원	이동기	강원대학교 교수	서양사	비상임
17	위원	이용윤	한국학중앙연구원 부교수	미술사	비상임
18	위원	김보은	기산중학교 교사	역사교육	비상임
19	위원	이예진	신도봉중학교 교사	역사교육	비상임